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개정 2013.3.24>

외국선박 통제 및 기국통제 관련 수수료 (제53조 관련)

수수료의 종류 근무시간의 구분	기본 수수료
근무시간 내	300,000원
근무시간 외	450,000원

- 비고 : 1. 기본수수료는 사무실 출발부터 사무실 도착까지를 기준으로 4시간을 적용한다.
2.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시간당 5만원을 할증한다.
3.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유형, 통제의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